

의안 번호	2484	<b>[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10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7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설비요건 중 면적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(안 제2조)
- 작은도서관 설비요건(건물면적 33㎡ 이상)예외규정 삭제(안 제4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도서관법」 제3조 및 제45조
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,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작은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상위 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, 안 제4조 작은도서관 설비요건(건물면적 33m<sup>2</sup> 이상) 예외규정 삭제 등임.
  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도서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·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교양습득·학습활동·조사연구·평생학습·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”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45조(도서관 인력·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)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,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,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·도서관 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도서관법 시행령

- 제33조(도서관 인력·시설·자료)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-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-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##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6]

###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(제33조제2항 관련)

#### 1. 시설 기준

- 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나. 작은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